휴대전화 무단 열람 및 위치정보 수집 관련 법령

[형법] 제316조(비밀침해)

법률 제22007호 · 2026. 10. 2. 시행

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,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, 문서,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 제49조(비밀 등의 보호)

법률 제21988호 · 2026. 10. 2. 시행

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·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·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] 제15조(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)

법률 제21066호 · 2025. 10. 1. 시행 · 제1항 발췌

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

2.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

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통신비밀보호법] 제14조(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)

법률 제21989호 · 2026. 10. 2. 시행

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.

② 제4조 내지 제8조,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, 제9조의2, 제11조제1항·제3항·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